

IMO 제5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(MEPC)

참석결과 보고

I. 일반사항

- 회의명 : IMO 제5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
(58th Session of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)
- 기간/장소 : '08. 10. 6~10. 10(5일간) IMO Headquarters, 영국 런던
- 참석자 : 안전기획팀 이경열 검사원

II. 의제목차

1. [의제 2] 평형수내 유기생물체
2. [의제 3] 선박재활용
3. [의제 4]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
4. [의제 5] 협약 개정 검토 및 채택
5. [의제 6] MARPOL 및 관련 협약 개정사항 해석
6. [의제 7] OPRC 협약, OPRC-HNS 의정서 및 관련 협약 결의서 이행
7. [의제 8] 특별해역과 특별 민감해역의 식별 및 보호
8. [의제 10] 전문위원회 보고서

III. 주요 결정사항

- 평형수내 위해 수중생물체
 -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에 대한 활성물질 승인 (GESAMP 6차, 7차 보고서)
 - 아국 (주)테크로스의 Electro-Cleen System 최종승인 획득

- 아국 (주)엔케이의 Blueballast System 최종승인 불허
- ※ 그 외 노르웨이(OceanSaver 최종승인) 허락, 일본(Toagosei 기본승인), 네덜란드(Greenship 기본승인) 및 독일(Ecochloro 기본승인) 신청 건에 대해서는 불허 결정
- 평형수 샘플링을 위한 지침서(G2) 제정 및 평형수 관리시스템 승인 지침서(G8) 개정(안) 채택, 제·개정사항 MEPC 결의서로 공지 예정
- 평형수 샘플링 및 분석 세부지침과 동 지침의 일관 적용을 위한 IMO 회람문서 개발을 BLG 소위원회에 지시
- FSI(기국준수위원회)의 항만국 통제관 지침서 개발시 상기 G2 참조
- “평형수 처리장치 형식승인정보 보고”에 관한 MEPC 결의서(안) 채택
- 선박재활용
 - 선박재활용협약(안) 완성 및 승인, 2009. 5. 11~5. 15 홍콩 외교회의에서 동 협약(안) 채택 예정. 아래 사항은 외교회의에서 결정토록 함
 - 협약 발효요건(비준국가 수, 재활용시설 총 처리능력, 세계 상선대 규모)에 대한 세부 기준
 - 비 당사국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선박재활용 협약의 준수 여부
 - 협약 적용대상은 총톤수 500톤 이하의 선박이나, 부록 1의 위험물질 통제는 모든 선박으로 규정됨에 따라, 이에 대한 적용범위 수정 등
 - ※ 협약(안) 변경사항 일부 편집 후 외교회의 개최 6월 전에 회원국 회람

- 선박재활용협약 이행 및 유해물질 목록에 필요한 지침서 개발을 위해 일본국 중재아래 통신판매업반 구성
 - 회의 시 MEPC 58/3/2(일본 및 독일 제출), 58/3/37(덴마크 제출), 3/10(독일 제출) 및 58/INF.18(일본 제출) 문서를 참조
 - 가능한 한 지침서 개발을 완료하고 성과물을 MEPC 59에 제출
-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(온실가스 저감)
 - 선박의 CO₂ 효율 측정을 위한 신조선 에너지 효율 설계지수(EEDI)에 대한 공식¹⁾을 결정, 계속 논의하기로 함
 - 상기 공식에 대한 잠정 지침서를 승인하고 MEPC 회람문서로 공람하기로 함
 - GHG(온실가스) 2차 중간회기 회의를 2009. 3. 9~3. 13일(의제문서 제출: '09. 2. 6) 런던 IMO 본부에서 개최하기로 함
 - EEOI식을 이용한 현존선 계산 및 관련 제반사항 등 대하여 의제를 제출하고 검토하기로 함
 - ※ 아국은 조선소와 해운사의 협조를 받아 2개 이상의 의제를 개발하여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
 - 동 의제중 시장기반의 조치(탄소세, 배출거래권 등), GHG 기금 조성 등에 대해서는 MEPC 59에서 논의하기로 함
- MARPOL 73/78 협약 및 관련 규정의 해석과 개정
 - MEPC 57에서 승인한 MARPOL 부속서 6 및 NOx 기술코드 개정을 채택하고 MEPC 58 결의서로 공지(개정안 발효: '10. 7. 1)하기로 함
 - 휘발성유기화합물(VOCs) 관리계획서 개발 지

- 침서를 채택하고 BLG 13의 검토를 인정함
- MARPOL 부속서 6 및 NOx 기술코드 개정 (2008) 관련 지침서 개발 및 최신화 등을 위한 BLG의 TOR(작업 범위)을 승인
- 가스 연료유의 황 함유량도 연료공급자에 의해 문서화되고 선박에 제공되도록 부속서 6 개정안(18.4 규칙) 추가

IV. 의제별 논의 경과 및 회의결과

의제 2	평형수내 유기생물체(RG)
------	----------------

- GESAMP-BWWG 6차, 7차 보고서 관련(선박평형수 처리 장치 활성물질의 기본승인 및 최종승인)
 - (관련문서 : MEPC 57/2/7, MEPC 57/2/8, MEPC 58/2, MEPC 58/2/1, MEPC 58/2/2, MEPC 58/2/3, MEPC 57/2/7, MEPC 57/2/8)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GESAMP-BWWG로부터 선박평형수 처리에 사용되는 활성물질의 기본승인 및 최종승인에 대한 검토 결과와 심의 방법론에 대한 보고를 받고, 위원회는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승인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GESAMP-BWWG은 다음과 같이 활성물질 기본승인, 최종승인을 권고
 - 일본 Toagosei의 TG 처리장치 기본승인 (MEPC 57/2/8) 허락
 - 네덜란드 Greenship 기본승인 (MEPC 57/2/7) 허락

1)
$$\left[\prod_{j=1}^M f_j \right] \left[\sum_{i=1}^{nME} C_{FMEi} SFC_{MEi} P_{MEi} \right] + P_{AE} C_{FAE} SFC_{AE} + \left[\sum_{i=1}^{nPTI} P_{PTI} - \sum_{i=1}^{nWR} P_{WHRi} \right] C_{FAE} SFC_{AE} - \left[\sum_{i=1}^{nEff} f_{eff} P_{eff} C_{Feff} SFC_{MEi} \right]$$

f_i Capacity $V_{ref} f_w$

- 아국 (주)테크로스의 Electro-Clean 최종승인 (MEPC 58/2) 허락
- 노르웨이 OceanSaver 최종승인 (MEPC 58/2/1) 허락
 - ※ 단, 중화장치 설치, 중화제의 인체 독성 검토, 브롬화합물 저감을 위한 공기 주입 등 기술 미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, 노르웨이 정부가 형식승인 증서 발행 전, 7차 보고서의 Annex 4의 요구사항을 확인할 것을 요청
- 독일 Ecochloro 기본승인(MEPC 58/2/2) 허락
- 아국 NK-O3 BlueBallast 최종승인(MEPC 58/2/3) 불허
- 위원회는 6차 보고서 Annex5, 6의 모든 요구사항을 향후 개발기간동안 설명하도록 일본, 네덜란드 정부에 요청함
- 활성물질 승인심의 정보 취득 방법 개정안 확인
 - 인체노출 시나리오와 위해요소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
 - 해양에 대한 위해도 평가시, 두 개의 만성 NOEC (무영양농도)가 해양위해평가에 적용 가능하고 세 가지 시험군의 급성 결과로부터 가장 민감한 생물의 만성 시험을 포함할 수 있다면, 경우에 따라 평가요소(AF) 100 적용 또는 가장 민감한 생물군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AF 1000 적용을 동의함
- 차기 제8차 GESAMP-BWWG 회의는 2009년 2월 16~20일 수행 예정이며, 이를 위해 신청서는 2008년 12월 19일까지 접수 예정
 - ※ 신청서가 3건을 초과할 경우, GESAMP-BWWG 회의를 추가로 소집할 계획
 - 아국은 NK-O3 BlueBallast System의 최종 승인 불허와 관련하여, GESAMP-BWWG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고, 충실한 추가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12월 19일 까지 최종승인 신청서류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발언

시료채취 지침서(G2) 완료 관련

(관련문서 : BLG 12/17, MEPC 58/2/5, MEPC 58/2/11, MEPC 58/2/13, MEPC INF.10)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BLG 12에서 작성한(BLG 12/17 Annex 1, MEPC 58/2/5) 시료채취 지침서(G2)의 완성을 요청함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BLG 12에서 작성한 시료채취 지침서(G2)를 검토 후 완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함
 - 단, 시료채취 지침서(G2)의 6.2.2의 시료채취 방법에 있어서, 대표성 확인을 위해 ‘whole’이라는 단어를 추가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함
- 보다 정확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여러 가지 논의(MEPC 58/2/11, MEPC 58/2/13)가 있었으나, 협약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시료채취 지침서(G2)의 채택이 시급하므로, 우선 BLG 12안을 일부 보완하여, 본 MEPC에서 채택하기로 함
- G2 지침서의 통일된 적용을 위해 “시료 채취 및 분석 지침”이 필요함을 인식하고, 추후 협약 발효 전까지 BLG에서 IMO 회람 문서를 만들기로 함
- G2 지침서의 기술적인 공조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각 회원국에 시료채취와 분석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권고함
- 또한, 이번에 채택한 G2를, FSI가 개발할 항만국 통제 지침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

형식승인 지침서(G8) 개정

(관련문서 : MEPC 58/2/4, MEPC 58/2/9)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MEPC 57차 회의에서 작성한(MEPC 58/2/4) 형식승인 지침서(G8)의 개정안을 완성하여 본

위원회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함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개정된 형식승인 지침서(G8) 채택 함
 - ※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도 처리된 평형수에 대한 독성시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
- 영국이 제안한 형식승인 개정내용(MEPC58/2/9) 등은 추후 BLG 13에서 논의하여, 추후 개정에 반영하기로 함

□ 형식승인 완료 평형수 처리장치의 정보 보고 결의서 초안 완성

(관련문서 : MEPC 58/2/5, MEPC 58/INF.20)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BLG 12에서 완성한 형식승인 완료 평형수 처리장치의 정보 보고 결의서 초안을 확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의서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함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형식승인 완료 평형수 처리장치의 정보 보고 결의서 채택함
- 한편, 브라질(MEPC 55/2/20) 등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추가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으나, 많은 논의 후, 일단 채택하고, 브라질이 다시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BLG 13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검토하기로 함

□ 평형수 처리장치의 적용 가능성 검토

(관련문서 : MEPC 58/2/10, MEPC 58/2/12, MEPC 58/INF.8, MEPC 58/INF.9, MEPC 58/INF.17)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제25차 IMO 총회에서는 평형수 관리협약의 적용일이 2009년 인 것은 2차 연차검사시까지 D-2 성능기준을 만족시키되, 2011년 12월 31

일 이후로 지연될 수는 없다고 결의한 바 있고, 적용일이 2010년 인 것은 MEPC 58차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음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이미 형식승인까지 마친 처리장치가 2개가 있으며, 곧 형식승인을 받을 처리장치도 있고, 기본승인을 마치고 최종승인을 준비 중인 처리장치도 많고,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기관도 충분하기에 적용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함
- 처리장치 생산 능력에 대해서는 2009년 7월에 열릴 MEPC 59에서 확인하더라도 2010년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
- 따라서 개발된 처리장치도 충분하고, 앞으로 개발될 처리장치도 많으므로 2010년 기술적 적용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, MEPC 59에서 검토반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기로 함

의제 3 선박재활용(DG 1)

□ 군함 및 관공선의 협약 적용 여부(MEPC 58/3/13)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군함도 협약의 범주에 포함시켜 적용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군함 및 관공선은 협약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협약 적용 대상임

□ 선박재활용시설 리스트 양식을 협약 부록으로 추가(MEPC 58/ INF.13)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선박재활용 시설 목록 양식을 협약 부록 8로 추가하자고 제안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선박재활용시설목록에 관한 양식을 협약 부록으로 추가하는 것은 고려되지 않음
- 이는 선박재활용시설을 인증하기 위한 양식에 이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 것

□ 국제법규 및 국제협약과의 관계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선박재활용 협약 및 지침서의 개발에 참조할 것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선박 조항 15.2의 문구 가운데 “including thos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[and the Basel Convention]”을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
- ILO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내용을 '09년 5월 홍콩에서 개최예정인 외교회의에서 추가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

□ 유해물질 처리 및 목록 지침서(MEPC 58/3/10, MEPC 58/3/1)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현재 선박 재활용 계획서는 사전 제거는 단지 간략한 참고용으로만 검토되고 있으나 이러한 작업이 유해하고 환경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므로 협약에서 취급되어야 함
- 유해물질 함유량 단위의 통일화, 신조선 선박에 유해물질목록 작성에 대한 표본 사례를 지침서의 “Appendix 3”에 포함
- 일본의 의견서에 따라 기존 지침서의 “Appendix 5 : 현존선에 대한 유해물질목록 작성의 표본 사례”를 일부 수정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현 시점에서는 유해물질목록에 추가적인 3가지 물질을 포함하지 않기로 하고, 향후 규정 6, 7에 따라 진행
- 유해물질의 경계조건을 협약의 부속서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, 향후 개발될 지침서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
- 유해물질지침서에 관한 의제는 시간부족으로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신작업반을 구성하여 검토할 계획

□ 자발적 감사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자발적 검사 수행 및 관련 결과 보고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협약초안 부속서 규정의 논리적 근거 확인이 필요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자발적 감사체계를 도입, 즉 Competent authorities or an organization recognized by the Party에 의해서 수행

□ 협약발효에 대한 조항(58/3/3, 58/3/14)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선박재활용 국제협약 효력일 및 선박재활용처리용량에 대한 기준 데이터에 대한 의견서 제출함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재활용 시설의 처리용량이 협약 발효일에 추가 결정항목으로 포함됨
- 발효조건 : 최소 []개회원국 이상+ 전 세계 상선 선대규모의 []%이상+[선박재활용 시설의 처리용량]
- 선박재활용처리용량에 대한 기준 데이터 및 구체적인 발효일 설정은 외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

□ 선박재활용계획 준비(MEPC 58/3/8, MEPC 58/3/4)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선박의 기국 정부는 재활용준비 증명서 및 계획에 대한 정보를 재활용시설/재활용시설 당국에 제공해야 함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기국 정부에게 완결문서를 누가 전달하는가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이 부분을 외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

□ 기타사항(외교회의에서 거론될 의제내용)

- 조항 3 : 적용(Application)
 - 3.3과 3.4에 제시된 적용선박(500 GT 이하)과 부록 1의 모든 선박(all ships)은 잘못 이해될 수 있다는 제안에 대해 문구 수정은 외교회의로 넘김
- 조항 14 : 분쟁해결(Dispute settlement)
 - 미국은 “negotiation or any other peaceful means agreed upon [by them]”을 제시하며 문구의 명확성을 제안함에 따라 외교회의에서 재검토함
- 조항 17 : 협약발효(Entry into force)
 - 협약발효 조건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현 시점은 3가지 기준, 즉 비준국가 수, 재활용시설의 총 처리능력, 전 세계 선대규모 등으로 설정하는데 합의함
 - 하지만 세부적인 발효조건이 수치는 외교회의에서 결정 필요 : 최소 []개회원국 이상 + 전 세계 상선 선대규모의 []%이상 + [선박재활용 시설의 처리용량]
- 규칙 5 : 위험물질목록(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)
 - 유해물질의 경계조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밑줄 친 부분을 외교회의에서 다루기로 함(“measur-

able concentrations of Hazardous Materials”)

- 규칙 9 : 선박재활용계획(Ship Recycling Plan)
 - 중국, 인도 등은 선박재활용계획의 승인 날짜가 14일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문구 수정을 요구하였고, 이에 따라 이를 외교회의에서 다루기로 함
- 규칙 10 : Surveys(감사)
 - 다음의 문구에서 [] 부분의 수정 문제를 외교회의에서 다루기로 함
 - “that the Ship Recycling Plan developed the Ship Recycling Facility(ies) [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, and,] unless a Party has made a declaration pursuant to Article 16.6, has been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(ies).”
- 규칙 25 : Reporting upon completion(최종 완결 보고)
 - 선박재활용작업이 마무리 된 후 재활용시설에서 발급된 “Statement of Completion”을 재활용 국가의 Competent Authority에 보고하고,
 - 기국 정부에게 완결문서를 누가 전달하는가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이 부분을 외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
- ILO 제안
 - 협약의 조항 15와 관련하여 작업자와 관련된 부분을 협약에서 명확히 언급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향후 외교회의에서 처리예정임
- 오스트리아 제안
 - 오스트리아는 비당사국의 재활용시설도 재활용협약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함

- 또한 미국, 싱가포르, 러시아 등도 이를 지지함에 따라 외교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

의제 4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(WG 1)

□ GHG(온실가스) 관련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과 관련하여 UN은 육상 부문에서의 배출규제와 더불어 선박량 증가로 인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해운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IMO로 하여금 해운분야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세우도록 함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GHG 저감과 관련하여 금번 MEPC 58차 회의에서는 작업반이 구성되었음
 - 의장 : 요시다(일본)
 - 일정 : 2008. 10. 7~9(3일간)
- MEPC 58차 본회의가 GHG 작업반에 위임한 사항(TOR : Terms of Reference)가운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
 - 에너지효율 설계지수에 대한 식²⁾을 잠정결정이 하였으며, 시험적으로 적용하기로 함
 - 상기 식과 관련하여 시험적으로 적용한 결과를 2차 GHG중간회기작업반(2009. 3. 9~13, IMO 본부)에 제출하기로 함
 - 에너지효율설계지수(EEDI)의 적용과 관련하여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강제화를,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개도국은 자발적인 적용을 주장하고 있음

3. 기타 사항

- 운항중인 선박의 연료효율성에 대한 BP(Best

Practices) 가이드라인 검토

- ICS외 4개국이 제안한 선박효율관리계획(Ship Efficiency Management Plan)과 관련해서는 차기 MEPC 회의(59차)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함

□ 시장기반의 저감방법(ETS, Global levy등) 관련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GHG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설계지수(EEDI) 및 에너지효율운항지수(EEOD)를 근거로 하는 기술적인 검토만으로는 충분한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장기반의 접근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Global Levy와 관련하여 중국, 브라질, 인도 및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주요 개도국은 UNFCCC 및 교토의정서상에 명기된 원칙(CBDP(Common But Differentiated Principle)을 근거로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는 반면,
 - 아국을 포함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주요 선진국들은 IMO 상의 다른 규정들이 모든 선박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논리로 반박
- 시장기반 저감방식과 관련하여 GHG 작업반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본회의로 넘겨짐
 - 본회의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주장근거가 상충됨에 따라 차기 MEPC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

2)
$$\left[\prod_{j=1}^M f_j \right] \left[\sum_{i=1}^{nME} C_{FMEi} SFC_{MEi} P_{MEi} \right] + P_{AE} C_{FAE} SFC_{AE} + \left[\sum_{i=1}^{nPTI} P_{PTIi} - \sum_{i=1}^{nWR} P_{WHRI} \right] C_{FAE} SFC_{AE} - \left[\sum_{i=1}^{nEff} f_{eff} P_{eff} C_{F_{eff}} SFC_{MEi} \right]$$

$$f_i Ca\ capacity V_{ref} f_W$$

3. 기타 사항

- 선진국과 개도국이 주장하는 논리가 서로 상충되고 있는 가운데 WWF(World Wide Fund)가 화물의 최종목적지(Destination)를 기준으로 한 탄소세부과방식의 접근방법(Global but differentiated)을 제안

의제 5	MARPOL 73/78 협약 및 관련 규정의 해석과 개정 (DG 2)
------	--

MARPOL 부속서 6 및 NOx 코드 개정의 채택 (관련문서 : MEPC 58/5, MEPC 58/5/1~58/5/12)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동 위원회는 MARPOL 부속서 6 및 NOx 코드 개정안을 MEPC 57에서 승인한 바 있으며, 이번 회기에 D/G을 통해 검토한 후 결의서의 채택을 요청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동 개정안의 발효 예정일을 2010년 7월 1일로 정함
- “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 계획서”의 개발을 위한 지침서 채택
- NOx 코드 개정안의 적용 관련으로 임시 지침서 승인
 - NOx 코드 개정안의 발효 예정일(2010. 07. 01) 전에 Tier II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엔진에 대해서는 적합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
- 황산화물 세정장치의 동등물 요건(Reg. 4) 관련하여, 연료유 중의 황 함유량 요건(4.50, 3.50, 1.50, 1.00, 0.50 및 0.10) 별로 동등한 성능기준을 제공하는 지침서 개발에 동의
- 현존 디젤엔진의 소급적용 요건에 따라서 Tier I 기준에 적합하게 개조작업을 한 디젤엔진에 대해서는 “실질적인 개조”로 간주하지 않는 것

으로 문구 수정

- 해상 연료유의 표준 사양에 대한 ISO 기준이 동 개정안의 발효일 전에 제공될 예정
- 황산화물 배출통제해역 지정기준의 완화 여부 관련으로 논쟁이 있었으나 동 개정안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
- 동 개정안 관련 지침서들의 개발 작업을 BLG에 위임하기로 결정
- Tier III 요건(2016. 01. 01 건조 선박에 적용) 관련하여, 디젤엔진과 후처리장치에 대한 승인 지침서는 2012년까지 개발하도록 BLG에 위임
- 가스연료 관련 사항을 동 개정안 Reg. 18.4에 추가
 - 가스 연료유의 황 함유량도 연료공급자에 의해 문서화되어 제공되어야 함

의제 6	MARPOL 및 관련 협약 개정사항 해석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Res.MEPC.108(49)의 개정 제안 검토 (관련문서 : MEPC 58/6/2)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기름배출감시 제어장치(ODMC)의 고장시 수동 운전 대체방법에 대한 개정 제안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현행 Res.MEPC.108(49)에 의하면, 기름배출 감시 제어장치의 고장난 경우 선원의 육안관찰만으로 유효하지 아니한 기름배출이 행해질 수 있음을 동 위원회는 인지하였고 대체방안을 DE에서 검토하여 MEPC 59에 보고하도록 위임함

MARPOL 부속서 1의 통일해석 검토 (관련문서 : MEPC 58/6, MEPC 58/6/1)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MARPOL 협약의 통일해석 제안사항 승인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MARPOL 부속서 1 / 12A규칙 “연료유탱크 보호” 규정에 따라 선저높이(h) 요건의 적용시, 스케그(skeg)가 있는 선박 또는 영구 트림으로 설계된 선박에 대하여 IACS가 제시한 통일해석 승인
- 유조선의 선저 손상 후 MARPOL 부속서 1 / 23.7.3.2규칙에 따라 화물높이 계산을 위해 이용되는 과압의 정의 관련하여 IACS가 제시한 통일해석 승인

MARPOL 부속서 1 / 12A 규칙의 적용 명료화
(관련문서 : MEPC 58/6/3)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단일선체구조 유조선을 Bulk/ore 캐리어로 화물구역만 개조하는 경우, 기관구역이나 기타 구역에 걸쳐 배치된 연료유 탱크의 보호 규정에 대한 적용 여부 고려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동 협약 부속서 1.9.1.2규칙에 따라 선종 변경은 주요개조에 해당되고, 이러한 주요개조를 한 선박은 신선으로 간주되므로 12A규칙을 면제 없이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됨

IOPP 증서 추록 B의 개정
(관련문서 : MEPC 58/6/4)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IOPP 증서 추록 B의 5.8 하부 항목들이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PSC로부터 IOPP 증서의 개정 관련 요구를 끊임없이 요구받아 오던 IACS가 구체적으로 명기된 증서 개정을 제시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IOPP 증서 개정에 대한 IACS의 제안이 승인되었고 DE에서 고려된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MEPC 59에서 결의서로 채택 예정

의제 7	OPRC 협약, OPRC-HNS 의정서 및 관련 협약 결의서 이행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8차 OPRC-HNC 기술그룹 보고서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2008. 9. 29~10. 3 영국에서 개최된 제8차 OPRC-HNC 기술그룹 논의 내용에 대한 보고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TG 8차 회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본 회의에서 승인함
 - 유출된 기름의 확인 및 관찰에 관한 지침서의 최종안을 MEPC 59에 제출토록 함
 - 합동정보센터(Joint Information Centers) 설립 지침서 문건에 포함된 정보를 교환하고, 단일 매뉴얼로 개발하는 것에 동의함
 - 해양환경에서 HNS 대응을 위하여 HNS 관리자 및 운전자 레벨의훈련과정을 위한 문건을 MEPC59차에 제출토록 함
 - HNS를 포함하는 해양사고 및 사건을 보고함
 - 2009년 OPRC TG의 의장으로 Mr. Nick Quinn(뉴질랜드, 부의장 서우락(해양환경관리공단)이 선출됨

매뉴얼 초안 승인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OPRC-HNS TG에 의해 완성된 ‘기름유출 위험 및 대응평가에 대한 매뉴얼’과 ‘해양오염유출후 환경피해 평가 및 복구에 대한 IMO/UNEP 매뉴얼’의 본회에서 검토 및 승인을 요청함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위원회는 ‘기름유출 위험 및 대응 평가에 관한 매뉴얼’의 초안을 승인하고 IMO/IPIECA의 보고서 발간을 IPIECA가 협조토록 지시함
- 위원회는 ‘해양기름 유출후 환경피해 평가 및

복구에 대한 IMO/UNEP 매뉴얼 초안을 승인하고, IMO/UNEP 매뉴얼로 발간하기 위한 준비에 UNEP이 같이 협조할 것을 사무국에 지시함

의제 8 특별해역과 특별 민감해역의 식별 및 보호

남극지역의 선박운항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 - 남극해역에서 선박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선박으로부터 기름, 케미컬, 오수, 폐기물 등의 배출로 인하여 남극환경의 오염될 가능성에 주목
 - FOEI, 그린피스, WWF 등은 남극해역 환경보호 조치를 개발하고 선박운항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IMO/ATCM 공동작업반 구성을 제안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 - 위원회는 IMO/ATCM 공동작업반의 구성은 불가함을 피력하였으나 2009년에 남극해역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 논의를 위한 워크샵 개최는 지지
 - 뉴질랜드, 벨기에 등은 해당 국가의 남극환경 전문가를 지원할 의사를 밝힘

의제 10 전문 위원회 보고서

BLG 13 회의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승인

(관련문서 : MEPC 58/10)

- 개정된 2007 IBC Code의 2009. 1. 1에 승인
- 2009 ESPH 작업반의 회기간 MEETING 개최 보류
- GTL(Gas to Liquid)의 해상운송 시 나프타, 경유 등과 같이MARPOL Annex 1에 따라 운반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승인한 BLG의 조치에

대하여 보증하고 동 내용을 MEPC Circular로 문서화 보급

- 선체의 생물학적 오염(Bio-fouling)에 따른 유해수중생물이동 최소화조치 개발을 위해 회기간 통신작업반 구성하기로 한 BLG 12의 결정에 대하여 검토

MARPOL Annex I 개정(STS Plan 관련 제8장 신설)

(관련 문서 : MEPC 58/10, MEPC 58/10/4, MEPC 58/10/7)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BLG 12에서 MARPOL Annex I에 “제8장 해상에서 유조선간 기름이송 시 오염방지”를 신설하기로 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MEPC 승인을 요구함
- STS 작업시 사전통보 적용해역에 대하여 적정성 제기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회원국은 STS PLAN 수립 및 이행에 대하여 찬성함
- 미국은 항해자유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STS PLAN에 따른 사전통보(notification) 적용 해역을 EEZ에서 영해로 축소 건의
- 사전통보시 주관청에 보고되는 정보는 LRIT 등의 정보와 동일하도록 노르웨이가 제안함
- 긴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회의일정상 다음회기에 논의하기로 연기함

기름기록부 기재방법 수정

(관련문서 : MEPC 58/10/5, MEPC 58/10/6)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기름기록부에 유성잔류물의 수분증발과 관련된 내용 기재시 CODE “C” 또는 “I”를 사용하기를 제안

- 기관실 빌지 보유량 파악의 용이를 위해 자발적인 기재 필요성 제기
- 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 - 유성잔류물을 인화점이상으로 가열하는 것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FP에서 논의토록 요청
 - 유성잔류물의 수분증발과 관련된 내용은 기름 기록부에 세심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CODE “C”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
 - 기관실 빌지홀딩탱크의 빌지보유량을 CODE “I”를 사용하여 기재
- FSI 16 회의 결과 (관련문서 : MEPC 58/10/2)
 - 사무국으로 하여금 PSC 점검자료와 해양사고의 조화에 대한 연구 제안의 승인
- 표준화된 사전 보고 양식(Advanced Notification Form) 초안에 대한 승인
- 표준화된 폐기물 운반 통지 양식(Waste Delivery Notification Form) 초안에 대한 승인
- NAV 54 회의 결과 (관련문서 : MEPC 58/10/3)
 - PSSA 해역을 포함하고 있는 Papahānaumokuākea 해상국립공원의 선위통보제도인 CORAL SHIPREP의 좌표를 조정할 사실 주목